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6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 김철민·박 정·권칠승

서영교 • 백혜련 • 이원욱

이정문 · 김민기 · 안민석

한병도 • 윤후덕 • 임종성

이용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월호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 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,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.

이런 협력체계하에서도 민간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음.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임.

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,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

왔음.

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 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65조제1항 본문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1항 본문 중 "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, 사망(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"을 "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, 사망(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그 유족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·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 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하였다가 부상 을 입은 자원봉사자,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민간 긴급 구조기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했 개 정 안 혂 제65조(치료 및 보상) ① 재난 발 제65조(치료 및 보상) ① ------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 책·복구 등에 참여한 자워봉사 자.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 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 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실시하고, 사망(부상으로 인하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 하며, 사망(부상으로 인하여 사 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 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 에는 그 유족-----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 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